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3
----------	------

제출년월일 : 2008년 6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되고 충청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표준안)개정안이 시달(총무과-4874, 2008.4.8)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위한 별표 변경적용(안 제3조제1항)
 -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별표 1 제1호 라목으로 개정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마련(안 제4조 신설)
 -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 1호 신설)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장관 명칭 변경(안 제5조 3호 및 7호)
 - 제17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제2항, 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변경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첨부 :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1부. 끝.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 1 제2호를”을 “별표 1 제1호 라목을”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3호(종전의 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 야당)
제1호	1 등급	등급	정 액	정 액	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 등급	2 등급	정 액	정 액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설 정액, 2등급은 일반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 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u>별표1 제2호</u> 를 적용 한다.</p> <p><u><신 설></u></p>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p> <p><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17조제1항단서중 “<u>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 5. (생략) 6. 제29조제1항중 “<u>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처장과 협의하여</u>” 및 동조제2항중 “<u>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u>”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종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종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보수규정</u>”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종 “전문직공무원규정”은 “<u>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u>”으로 한다.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u>별표 1 제1호 리목</u> —————</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u>한다.</p>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3. ————— “<u>행정안전부</u>—————” 4. ~ 6. (현행과 같음) 7. ————— “<u>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u>—————”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보수규정</u>”으로, “<u>계약직공무원규정</u>”은 “<u>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u>”으로, “<u>일반계약직 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u>”, “<u>전문계약직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u>”으로 한다.

□ 관계법령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3]

제17조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 2008.2.29>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1.3.20]

제26조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3.20>

③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 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07.11.13>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제28조 (여비의 조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7.11.13>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 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7.11.13, 2008.2.29>

②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③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2008.2.29>

[별표 1] <개정 2008.2.29>

여비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p>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p> <p>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p> <p>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p> <p>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미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p>
제1호	

제2호	<p>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p>
	<p>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p>

[별표 2] <개정 2008.2.29>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08.2.29>

국외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항 공 운 임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1등정액
기타의 자	2등정액

비 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천시 공고 제 2008 - 589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 18.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되고 충청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개정안이 시달(총무과-4874. 2008.4.8)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위한 별표 변경 적용(안 제3조제1항)
 -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별표 1 제1호 라목으로 개정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마련(안 제4조 신설)
 -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함
(안 제5조 1호 신설)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장관 명칭 변경(안 제5조 3호 및 7호)
 - 제17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제2항, 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 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변경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 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운영팀)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454, FAX 641 - 5469 담당자 : 김정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 사보	자치운영팀장				
김정구	06/02 이춘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 2008-589호
3. 공고기간 : 2008. 4. 18 ~ 2008. 05. 08(20일간)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344명
 - 의견 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별지) 끝.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통보

지방공무원과-324(2008. 4. 7.)호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1부. 끝.

충청북도 지방행정위원회



수신자 대(1-12)시군인사부서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원 ★지방행정사무관 박은삼 ★총무과장 김호동

전결 04/08
감호동

협조자

시행 총무과-4874 (2008.04.08.) 접수 자치운영팀-3811 (2008.04.11.)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524 / 전송 043) 220-2529 / kwkim99@cb21.net / 공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 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4 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제 5 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